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6
----------	------

발의년월일 : 2018. 9. .
발 의 자 : 방미숙 의원 (인)

1. 제안이유

-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제 5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로 적용 대상 확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7~8호 신설
- 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한함)
- 나.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1항 4호 신설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0,000원
- 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추가(별지 제3호 서식)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보훈보상대상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2019년)
70,000원 × 23명 × 12개월 = 19,32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2019년)
50,000원 × 700명 × 12개월 = 420,000,000원
- ※ 시행일 기준 지원가능 개월 수에 따라 조정 가능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10월 17일 ~ 10월 27일(1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적합

9. 관련부서 : 하남시 복지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8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한함)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인당 월 5만원

제9조제1항 중 “사망위로금”을 “사망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훈명예수당” 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신규 계좌변경 미지급청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망한 참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계좌 정보	구 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신규신청			
	계좌변경			
<p>「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하남시장 귀하</p>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생략)</p> <p>1. ~ 6.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u></p> <p>8.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한함)</u></p>
<p>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생략)</p> <p>1. ~ 3.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인당 월 5만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u>사망위로금</u>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u> 따른 신청서를(주민등록지 동장)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 ----- <u>사망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u>-----<u>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및 결정)</p> <p>① (생략)</p> <p>② <u>보훈명예수당</u>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말(공</p>	<p>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및 결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u>-----</p>

현행	개정안
<p>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p> <p>③ (생략)</p>	<p>-----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지급중지의 결정) ① <u>보훈명예수당</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p> <p>1. 2. (생략)</p>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u>보훈명예수당</u>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p> <p>제12조(환수조치) ① (생략)</p>	<p>제11조(지급중지의 결정) ① <u>보훈명예수당</u> 및 <u>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u>보훈명예수당</u> 및 <u>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u> ----- -----.</p> <p>제12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u>보훈명예수당</u>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 ----- <u>보훈명예수당</u> 및 <u>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u>을----- ----- -----.</p>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